

2023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후 2시
(회의소집일 : 2022년 1월 20일(금))
2. 장 소 : 대학본부 3층 회의실
3. 개최기도 : 이정옥 위원
4. 참석현황 (정원 12명, 재적 12명, 참석 10명)

구성위원	정원	재적	참 석 자 명 단	불 참 자 명 단
교 원	3명	3명	이정옥 양명석	최경윤
직 원	2명	2명	김동인 조은미	
조 교	1명	1명	조우진	
학 생	3명	3명	강다영 김예은 최준희	
동 문	2명	2명	한혜실 함선희	
외부인사	1명	1명		이영섭
합 계	12명	12명	10명	2명

- 배석자 : 박용선 사무처장, 배진희 기획처장, 형희경 교무처장, 한송희(간사)

5. 안 건

- 1)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건.
- 2) 2022학년도 교비 추경 예산(안) 심의 건.
- 3) 2023학년도 교비 예산(안) 심의 건.
- 4)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건.
- 5)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건.
- 6)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건.
- 7)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건.
- 8) 예수대학교 예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건.
- 9)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건.
- 10)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 서명자 지명 건.

김동인	조우진	이정옥
-----	-----	-----

6.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한혜실 임시의장이 정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선언을 한다.

7. 전 회의록 접수

- 전 회의록 확인 후 조은미 의원의 동의와 양명석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다.

8. 회의내용

1) 제1호 의안 :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건

- 한혜실 임시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에 의거 본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됨을 설명하고 의장과 부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다.
- 의장 후보로 한혜실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김동인 의원이 각각 추천되다.
- 한혜실 임시의장이 추가로 추천된 후보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물어 참석위원 10명 중 10명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 한혜실 임시의장이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으로 한혜실 의원이, 부의장으로 김동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공포하다.

2) 제2호 의안 : 2022학년도 교비 추경 예산(안) 심의 건

-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배진희 기획처장이 2022년 교비 추경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다 음 -

예산 7,300,262,910원, 추경예산 7,247,353,727원, 감 52,909,183원

- 한혜실 의장이 2022학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를 요청하니, 원안대로 심의하자는 최준희 의원의 동의와 조은미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다.

3) 제3호 의안 : 2023학년도 교비 예산(안) 심의 건.

-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배진희 기획처장이 2023학년도 학교 본예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다 음 -

2022학년도 예산 7,247,353,727원, 2023학년도 예산 6,559,279,750원, 감 688,073,977원

- 한혜실 의장이 2023학년도 본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를 요청하니, 원안대로 심의하자는 양명석 의원의 동의와 조우진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하여 원안대로

김종인

조우진

이재욱

심의하기로 의결하다.

4) 제4호 의안 :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건

-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신구대조표로 설명하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조(학년, 학기)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8조(학년, 학기) ① - ② 현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다학기제 및 유연학 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 마련
제31조(교육과정)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u>비교과교육과정</u> 으로 편성·운영한다. ②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u>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규정으로 정한다.</u>	제31조(교육과정) ①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으로 <u>편성·운영한다.</u> ② <u>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u>	
제36조(학점취득의 특례) ① 생략 ② <u>국내·외의 다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군복무 중 평가인정 교육·훈련 과정 이수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군복무 중 이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u> ③ 생략	제36조(학점취득의 특례) ① 현행 ② <u>편입생의 학점취득 특례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u> ③ 현행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를 마련하며 기존 학점취득의 특례에 있었던 학습경험 인정 내용을 36조의 2로 개정함.
신설	제36조의2(학습경험인정) ① 학생의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외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 마련

김동민

조우진

이재욱

	다른 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행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군복무경험 포함)등의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	
신설	제37조의2(마이크로디그리) ① 우리 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융복합 사고능력의 함양을 위한 마이크로디그리를 둔다 ②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사제도 유연화 제도 마련
제90조(부속기관) ① 생략 ... <u>11. JU보건복지서비스센터</u> ... <u>25. 데이터기반교육질관리센터</u> ...	제90조(부속기관) ① 현행 ... <u>11. 지역협력센터</u> ... <u>25. 미래교육센터</u> ...	부속기관 명칭 변경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함선희 의원의 동의와 강다영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

5) 제5호 의안 :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건

-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친구대조표로 설명하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수강신청) ① 생략 1-3. 생략 <u>4. C+학점 이하의 모든 교과목은 2회에 한정하여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확인에서 해당과목이 재수강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u>	제5조(수강신청) ① 현행 1-3. 현행 <u>4. 재수강 절차에 따라 재수강 신청을 한 경우 수강신청확인에서 해당과목이 재수강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u>	재수강에 관한 내용이 중복되어 제5조에서 삭제하고 제28조로 규정하고자 함
<u>제13조(채플) 채플과목은 (편입생</u>	삭제	38조(채플) 내용 중

권종민	조우민	이재우
-----	-----	-----

은 2학기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복으로 삭제하고자 함
제18조의3(출석인정)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장에게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계가족의 사망(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해당기간) 3. 질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해당기간) 4.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유(해당기간) 5.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각종행사(졸업여행, 현장학습 등)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6.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부장이 인정할 때(해당기간) 7.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인턴 포함)한 경우(해당기간, 1회에 한함) ②-③ 생략 ④ 1항의 2호,3호,4호,5호,6호의 경우 출석인정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1/4이내에서 허용한다.	제18조의3(출석인정)①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소속 학부장에게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인정 범위와 기간은 출결관리 내규에 따른다. 1. - 7. 삭제 ②-③ 현행 ④ 출석인정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1/4이내에서 허용한다.	출석인정 기간 및 범위가 학칙시행세칙과 출결관리내규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학칙시행세칙에서는 출결관리내규를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종민

조우권

이재우

제28조(교과목의 재수강)① C+학점 이하의 모든 교과목은 2회에 한정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8조(교과목의 재수강)① C+학점 이하의 모든 교과목은 2회에 한정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u>단, 장애학생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수강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u> ② - ⑤ 현행	장애학생의 재수강 횟수를 따로 정하여 학습지원을 하고자 함
---	--	----------------------------------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정옥 의원의 동의와 김예은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

6) 제6호 의안 :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건

-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신규대조표로 설명하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6조(입학자격)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신설	제6조(입학자격)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2. 현행 3.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입학일 이전 취득예정자	제10조 내용과 통합하여 개정
제10조(입학전공분야) ① 입학지원자가 지원하는 대학원 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하위 학위과정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간호학과 입학지원자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6조에 통합하여 개정하고 제10조 삭제
제14조(휴학) ① 생략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기간(통산 2학	제14조(휴학) ① 생략 ② <u>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u> ③ 휴학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학위과정은 <u>4학기를</u> 초과할 수 없	휴학기간을 연장하여 학생들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김 종 인

조 우 권

이 재 영

기 이내) 및 창업기간(통산 2학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까지,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생략	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기간(통산 2학기 이내) 및 창업기간(통산 2학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까지,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생략	
	<u>부 칙</u> 이 학칙은 2023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학칙개정 절차를 규 정하고자 함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김동인 의원의 동의와 조우진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

7) 제7호 의안 :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건

-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신규대조표로 설명하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휴학) ① ~ ② 생략 ③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질병 및 병역,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제8조(휴학) ① ~ ②생략 ③ 삭제 ④ ~ ⑤생략 <u>부 칙</u> 이 학칙은 2023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첫학기 휴학 불가 규정을 삭제하여 학생들이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함선희 의원의 동의와 최준희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

김 종 인	조 우 진	이 재 우
-------	-------	-------

8) 제8호 의안 : 예수대학교 예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건.

- 한혜실 의장이 「예산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예산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해야 할 2명의 대표를 선임하기 위해 본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 예산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후보로 고희성, 정원호 위원이 추천되고 한혜실 의장이 찬반을 물으니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하여 의결하니 의장이 예산조정위원회 대학평의회 추천자로 고희성, 정원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공포하다.

9) 제9호 의안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건.

- 한혜실 의장이 개방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정관 제20조의5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대학평의회에서 3명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3명의 후보 추천을 요청하다.
- 논의 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윤진, 함선희, 조은미 위원이 추천되고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니 의장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대학평의회 추천위원으로 윤진, 함선희, 조은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공포하다.

10) 제10호 의안 : 대학평의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건.

- 한혜실 의장이 본 회의록 간서명자의 지명을 요청하니 이정옥 의원, 김동인 의원, 조우진 의원 이상 3명이 추천되니 지명하기로 하고 참석의원 10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지명 의결하다.

9. 폐회선언

- 한혜실 의장이 폐회에 대한 성안을 요청하니 양명석 의원이 동의하고 함선희 의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5시 28분 이었다.

김 동 인	조 우 진	이 정 옥
-------	-------	-------

기록 : 한송희간사 ~~한송희~~

확인 : 양명석의원 (인) 양명석

이정옥의원 (인) 이정옥

조은미의원 (인) 조은미

김동인의원 (인) 김동인

조우진의원 조우진

최준희의원 최준희

강다영의원 (인) 강다영

김예은의원 (인) 김예은

한혜실의원 (인) 한혜실

함선희의원 (인) 함선희

김 동 인

조 우 진

이 정 옥